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제외 대상에 대한 공급전 안전점검 관련 질의

Q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제외대상에 대한 공급전 안전점검 관련,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시설 중 지하관 및 건축물 내 매물관 등 매물관 시공시 도시가스사업자가 중간입회를 반드시 시행하고 시공 완료시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A 귀하께서 우리 지식경제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에 따라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공급전 안전점검과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제도는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상세한 방법은 해당 도시가스사의 안전관리규정과 공급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에서 공급전 안전점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대해 가스공급전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하며 사용자 시설의 시공과정 중간입회를 반드시 시행해야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①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정률)이나 정액(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2조(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8조의 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업계·학계의 의견이나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업계에서 최적의 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에 준하여 작성한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3. 공사감독 및 검사

3.1. 회사는 공급시설공사에 대하여 착공에서 공사완료시까지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3.2. 회사는 가스시설을 설치(변경)할 경우 법에서 정한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제외대상 시설은 공급전안전점검(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제외대상)에 대해 가스공급전 공급자가 실시하는 점검)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3. 회사는 시설공사 완료 후 시설의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사항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 3.3.1. 검사(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3.3.2. 검사(점검)서류 항목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3.3.3. 시설별 검사(점검)표에 관한 사항
- 3.3.4. 공급전 업무협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도시가스공급규정(경기도)]

제13조(공급전 안전점검)

① 당사는 시공자가 분기공사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완공한 후 제반구비서류를 갖추어 공급전 안전점검을 요청할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공상태가 재규정



에 적합한 상태에서 가스공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전 안전점검 결과 수요자의 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는 가스를 공급하기 전 시공상태의 불량내역과 시공회사의 소재지, 상호 등을 파악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수요자와 해당 시장·군수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점검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요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가스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④ 당사는 공급전안전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입배관공사비를 수요자가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소정의 공사계약서 서식을 정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무한지식

먹는 일에 목숨 걸면 역사가 바뀐다.

음식이란 풍요와 여유를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특별한 의미없이 고단한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에너지공급원에 불과할 때도 있다. 바로 그 음식 때문에 세계사의 지형도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다. 음식과 세계 역사의 함수관계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가지를 살펴보자.

고대 중국에서 유럽으로 이어진 교역로인 실크로드에 대해서는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학자 쓰루미 교수는 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길은 비단길만이 아니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해삼길'도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삼 요리' 하면 중국 음식점부터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텐데 실제로 중국인들은 예부터 해삼에 열광했다고 한다. 수요가 많은 중국에 해삼을 내다팔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멜라네시아 제도에 사는 사람들까지 해삼잡이에 나섰다. 그 와중에 피지 섬과 호주 원주민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어민들까지 '해삼경제권'에 뛰어들게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중국의 비단을 해삼과 맞바꾸려는 도쿠가와 막부의 계산 때문에 홋카이도의 원주민 아이누족이 해삼잡이에 마구잡이로 동원되는 비극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하면 달콤한 설탕의 역사에는 쓰디쓴 역사가 곁친다. 설탕은 17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유럽 귀족들의 향신료나 사치품 혹은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던 귀한 음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1650년대 영국과 네덜란드가 식민지 개척에

나서면서 대중화되었고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산업혁명 시기이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온 사람들은 하루 열두 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을 버티기 위해 고칼로리 음식을 원했다. 그렇다고 고기를 살 돈은 부족했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찾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설탕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힘겨운 생존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고작 설탕 한순갈이었다니, 왠지 설탕 맛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한편, 우리가 주로 탕으로 끓여먹는 대구는 10세기 무렵부터 유럽인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이 대구 어장을 둘러싸고 유럽 여러 나라가 자주 충돌했다. 특히 1972~1976년에는 영국과 아이슬란드가 대구의 어업권을 둘러싸고 세 차례나 '대구전쟁'을 벌였던 일이 유명하다.

아이슬란드는 수산업이 주요 산업인데 영국의 어선들이 대구를 마구 잡아가지자 아이슬란드는 주요 수입원을 빼앗겨 외화 사정이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아이슬란드는 1972년에 어업 수역을 12해리로 확대하면서 영국과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결국 그로 인해 두 나라 사이에 한때 국교가 단절되기도 했는데, 이후 200해리 경제 수역이 국제적인 추세가 되자 영국 어선들이 아이슬란드 근해에서 철수함으로써 대구전쟁은 막을 내렸다.

이런 예들을 살펴보면 먹는 것에 목숨건다는 이야기가 예사롭게 들리지만은 않는다.

- 「정재승의 도전! 무한도전」 중에서